준법감시인심의필 2026-01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Since 201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contents

01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

1. 노후준비의 중요성 4
2. 노후준비 기본 전략 5
3. 자산 · 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 5

02 퇴직연금제도 일반

1. 퇴직연금제도 이해(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 6
2. 수급권의 보호 11
3. 퇴직급여의 지급 12

0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

1. 원리금 보장 상품이란? 16
2. 실적배당형 상품이란? 16
3. 펀드(집합투자증권, 실적배당형보험)의 특징 17
4.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내 18

04 추가 안내 사항

1. 퇴직연금 부담금 관련 현황 21
2.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 21
3.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 확인(가입자권익보호)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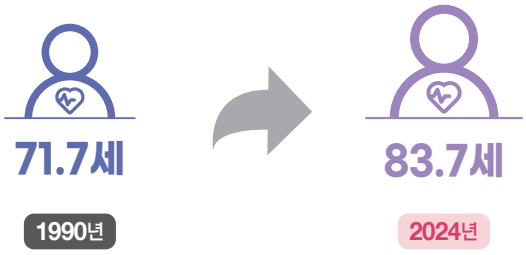
PART
01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1. 노후준비의 중요성

-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시간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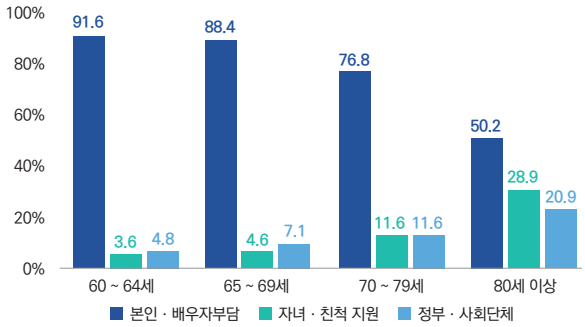
-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 비율 중 본인 부담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평균 퇴직연령은 52.9세('25년 국가데이터처)로 노후대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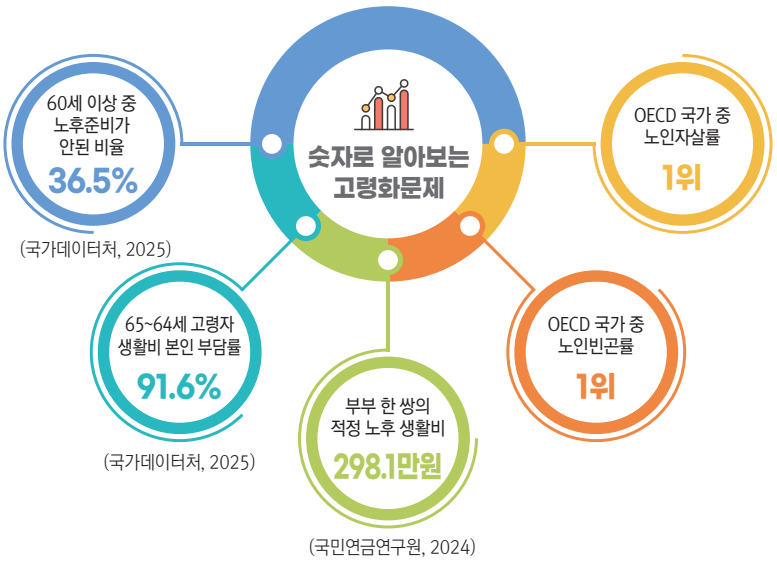
※ 출처 : 2024 생명표, 국가데이터처

연령대별 생활비 마련 방법



※ 출처 : 2025 사회조사(복지), 국가데이터

숫자로 알아보는 고령화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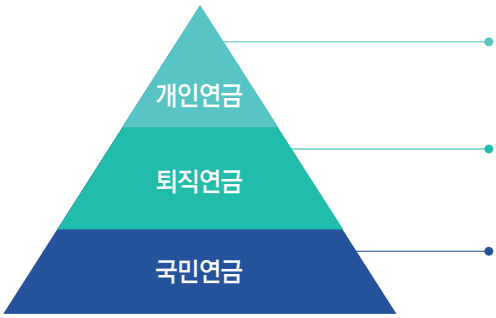
-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길어지는 노후 기간을 '품위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후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래생활을 예측하고 현재의 재무상황을 점검하여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노후준비 기본 전략

-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개인연금으로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며 현재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3층(자기보장) – 여유로운 생활보장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

2층(기업보장) – 안정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1층(국가보장) – 기본적인생활보장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

■ 한국의 노후보장은 3층 체계로서
1층 – 국민연금, 2층 – 퇴직연금, 3층 – 개인연금으로 구성

※ 출처 : 금융감독원

3. 자산·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



■ 중·장기적인 재무계획 아래 종잣돈 마련에 주력
■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습관 필요

■ 소득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결혼, 주택마련 등 지출도 늘어나는 시기
■ 목적자금 마련 플랜을 통해 재무이벤트를 준비해야 함

■ 자녀 대학등록금, 결혼 등 큰 목돈지출에 대비한 자금관리 필요
■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노후 소득점검 필요

PART
02 퇴직연금 제도 일반

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퇴직급여제도란?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말합니다.

- 퇴직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일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구성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Retirement Pension Fund for SMEs)제도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을 위하여 새로운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도입되었으며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회사가 쌓고 회사가 운용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함
-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 수령

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
-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

IRP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 근로자가 이직,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세제혜택(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Retirement Pension Fund for SMEs)
- 회사는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자산운용전담기관 운용)
-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 · 사 · 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전문적 ·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퇴직급여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개인형 IRP
퇴직급여	(평균임금×30일)×근속기간	연간 임금총액×1/12 ±운용수익(손실)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수익(손실)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회사)	가입자(근로자)	근로복지공단	가입자(개별)
가입자 부담금	납입불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모든 연금계좌 합산) 하며 세액공제는 납입액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의16.5%(13.2%)		
급여수령 방법	• 퇴직 시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일 때 일반계좌로 수령 가능. ※ 일반계좌 수령시 연금수령은 불가			• 연금 수령 : 55세 이상, 수령기간 5년 이상 • 일시금 수령 : 언제든지 계좌해지 가능
중도인출	불가	가능(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		
지원금지원 (사용자 및 가입자 지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용자가 납입한 정기부담금의 10%** ※ 대상 :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 지원 ※ 기준 : '26년도 기준 전년도('25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자	해당없음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구분	의의	적용
임 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세부적인 임금 포함 항목은 회사를 통해 확인	
평균임금	•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제도 퇴직급여 산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 퇴직급여 산출
(연간) 임금총액	• 1년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의 합계액으로 퇴직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총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퇴직급여 산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산출

※ 평균임금과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산입하나, 사업장의 임금지급 실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현황

| 부담금의 종류 |

- **퇴직연금(DC) :**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가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가입자 추가 부담금' 두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하는 사용자 부담금계정 부담금과 근로자가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가입자부담금 계정 부담금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및 납입시기 |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 **납입시기 :**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 1
- **정기 납입일(자동이체일) :** 1일, 10일, 25일 중 택 1

| 부담금 납입 현황 안내 |

- **부담금 납입 현황 :** 우편·전자문서(카카오톡 문서) 등으로 고지된 퇴직연금(DC)·기금(푸른씨앗) 운용현황 안내 및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부과 |

구분	내용
지급사유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기[규약(DC) 또는 표준계약서(기금제도)상 납입예정일(12.31.)이며, 연장한 경우 그 기일]에 미납하는 경우, 미납한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조)
지연이자율	• 납입기일 다음날 ~ 퇴직 후 14일 : 연 10% • 퇴직 후 14일 다음날 ~ 납입일 : 연 20%
지연이자 제외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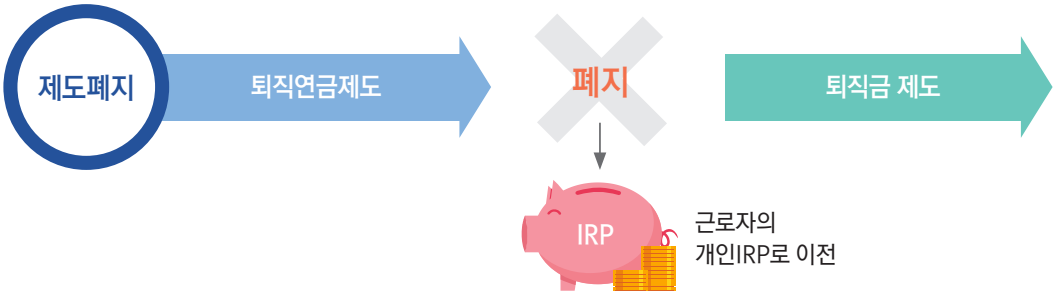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 폐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

-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폐지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의 적립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됩니다.

- 폐지된 이후 다른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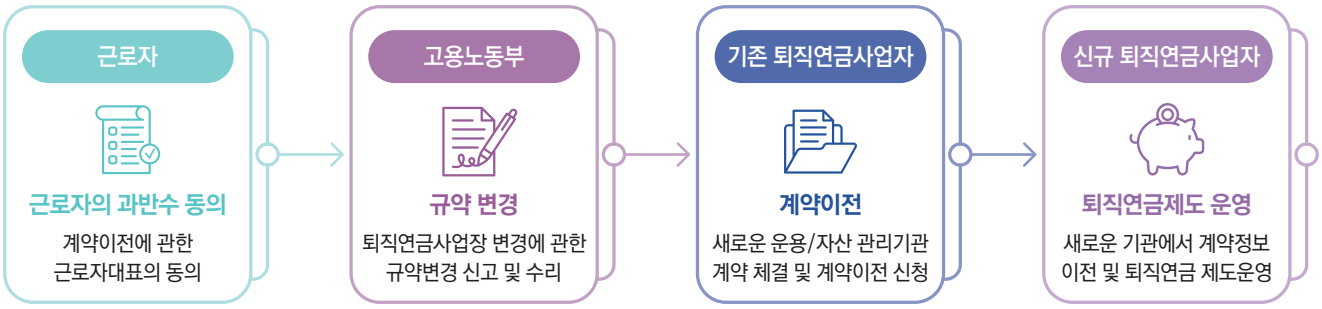
-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적립금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만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폐지된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진행합니다.
 -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미납 부담금 납입
 - 가입자에게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등 통지
 -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적립금 지급
 - (퇴직연금제도인 경우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 제출(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

•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를 변경하여 퇴직연금계약을 타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기업형IRP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이전 절차

• **(타 연금사업 ➡ 기금제도)** 별도 규약신고 없이 기금제도로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가입자 일부 이전 포함)





2.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단, 가입자가 법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 한도(적립금의 100%)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담보제공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액의 50%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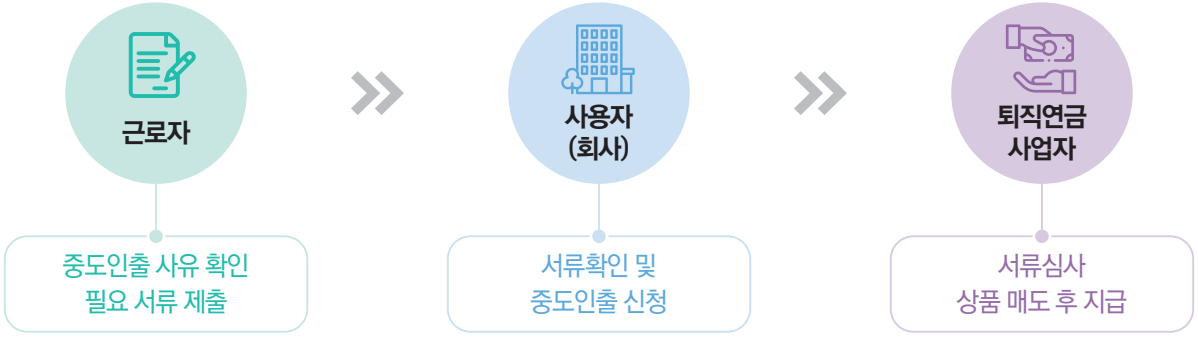
| 중도인출 요건과 사유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현재 중도인출만 가능

구분	중도인출 사유	담보제공 사유
	•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 구입	• 좌동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동일 사업장 재직 중 1회만 가능)	• 좌동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부양가족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 – 의료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중도인출 신청 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좌동
	• 최근 5년 이내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개인회생 ※ 중도인출 : 결정일/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담보대출 : 담보를 제공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 좌동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해당)	• 좌동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발생 사유는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 프로세스 |



| 중도인출 시 필요서류 |

- **퇴직연금(DC) :**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퇴직급여중도인출 신청서(별지 제19호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첨부서류) 퇴직연금 · 기금(퇴직급여) 중도인출 신청서 서식 하단 참조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DC)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적용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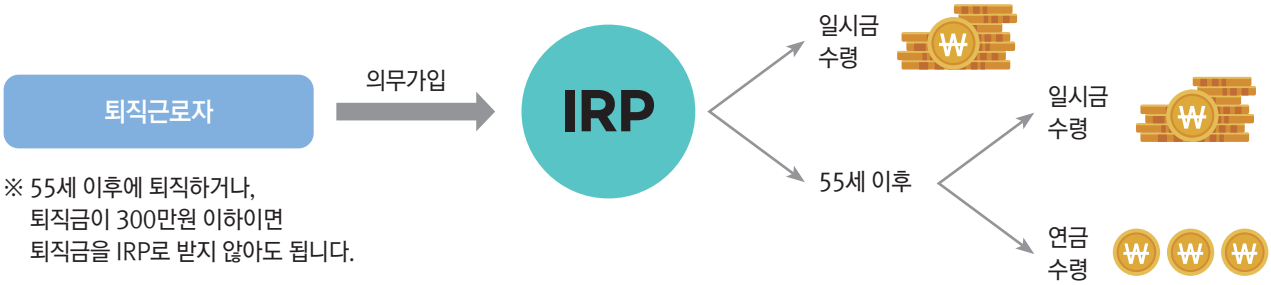
▶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 및 IRP과세이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가입자 추가부담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로 과세 됩니다.
(단, 중도인출 사유 중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됨)

3. 퇴직급여의 지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의 적립금 이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모아 은퇴시점까지 보관 ·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	제도유형	수급요건
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	DB, DC, 퇴직연금 IRP(기업형/개인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원칙 : IRP 계좌로 이전 • 예외 :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금 수령가능 ※ IRP 계좌로 이전된 적립금은 언제든지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 가능



※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퇴직금을 IRP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이 30% 감액됩니다.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효과

• IRP의 3가지 효과

구분	내용
과세이연	•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어 투자기회 창출 –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수령 시 세금 차감없이 전액 입금, 자금인출(일시금, 연금)까지 세금 납부 연기 – 세금이 원금에서 차감되지 않아 이연세액이 재투자되는 효과
절세효과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자산관리 운용효과	• IRP내에서 다양한 상품 선택 및 투자비율 변경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가입자부담금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금은 한도내 세액공제 대상

참고 개인형퇴직연금 · 기금제도 연간 납입액 한도와 세액공제

▶ 근로자 희망 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연금저축, DC, IRP, 기금 합산) 추가 납입 할 수 있으며, 총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900만원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연 600만원(퇴직연금 · 기금 + 연금저축) 연 300만원(퇴직연금 · 기금에 한해 추가)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 16.5%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초과 : 13.2%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용상품 중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형태

① **원리금보장형**
-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
- 예금자보호 가능

② **실적배당형**
-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을 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 배당
-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퇴직연금 과세체계

- 연금계좌에서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 원천(퇴직급여, 가입자추가부담금 및 운용수익)과 수령 방법(일시금과 연금 수령)에 따라 과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원천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주1)]
퇴직급여(사용자 부담금)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70%)
가입자추가부담금[주2)]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연금소득세[주3)](3.3% ~ 5.5%)

주1) 연금수령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받는 금액 중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

- 연간 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현재연금계좌평가액}}{(11-\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2013.03.01.이전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금수령연차에 5를 더하여 계산.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등)로 해지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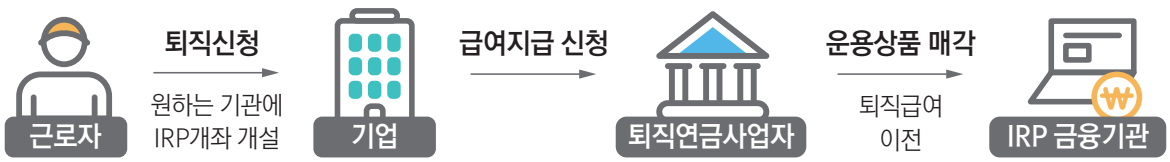
주2) 가입자추가부담금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제외.

주3) 가입자추가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임.

퇴직급여 지급 절차

- 퇴직급여의 조속한 지급 처리를 위해서 가입자와 사용자는 퇴직 발생 즉시 공단에 퇴직급여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고용종료 신고와 별개 신고임에 유의)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은 반드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계좌**에 이전하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 IRP이전 시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과세이연 되므로 퇴직소득세 상당액만큼 투자 원금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어 노후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합니다.

- 근속연수 1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1년 미만인 자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4조 3호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을 위해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예외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퇴직급여 신청 방법

- 〈퇴직근로자〉 IRP계좌개설 ➡ 〈사용자〉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 ➡ 〈퇴직연금사업자〉 IRP계좌에 퇴직급여 지급

※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 퇴직연금제도(DC/IRP)선택 → 전자민원창구 → 납입/지급 → 퇴직연금지급신청(사업주) → 가입자 동의(가입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 팩스신청시 구비서류 ① 퇴직연금 급여지급(IRP이전)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② 퇴사자명의 IRP계좌사본첨부 필수, 그 외 지급사유별 첨부서류는 신청서 하단을 참조



PART
0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

1. 원리금 보장 상품이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 의한 운용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체신 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원리금 보장상품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보장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안정적인 금융기관, 체신관서,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에 한하여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추가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의 대상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1억원 까지 보장됩니다. ☞ '25. 9. 1.「예금자보호법」시행

※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매월 변동)는「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퇴직연금소개 ➡ 사업자 공시」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동 페이지에 표시된 금리는 '단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실적배당형 상품이란?

-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투자위험에 따라 기대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현재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은 집합투자(펀드)의 형태로만 투자되고 있으며, 주식/채권의 직접투자는 불가능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vs 실적배당형 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실적배당상품
사전에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의 변동성은 적으나 비교적 수익이 낮은 편입니다.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결정되는 상품이 실적배당형상품이며, 일정 수준의 투자 위험이 동반됩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 받고 싶다면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실적배당형상품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퇴직연금 정기예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각종 퇴직연금 펀드입니다.

※ 공단의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투자상품은「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상품투자가이드 ➡ 상품소개」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펀드(집합투자증권, 실적배당형보험)의 특징

• 펀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집단성, 간접성, 투자자 평등 및 실적배당의 원칙이 있습니다.

| 펀드의 특징 |

항 목	특 징
집단성	• 기금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어 적은 돈으로 투자 가능 – 투자자금이 적으면 여러 가지 투자대상에 나누어 투자할 수 없음. 그러나 펀드는 소액을 모아 큰 자금으로 만들어 투자하므로 투자 수단도 더 다양해지고 위험도 줄어들게 됨. 즉, 값비싼 우량주나 거래단위가 큰 채권 등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충분한 분산투자도 가능
간접성	• 투자와 운용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음 –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리서치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여러 상품에 적절한 시간에 투자하고, 위험한 종목에 대한 위험관리 작업을 모두 잘 하기는 어려움. – 펀드는 적은 비용으로 투자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투자자 평등	• 개개인의 투자자들이 수익 등에 있어 투자한 만큼의 권리를 가짐 – 투자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수익배분에서 투자지분에 따른 권리를 가짐
실적배당	• 투자자는 펀드의 운용실적대로 투자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음 – 원리금보장상품과 달리 편입자산의 가격변동 또는 발행주체의 파산에 따른 수익 및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됨.

• 실적배당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개요

- DC 또는 IRP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운용상품 만기 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상품)

-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친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상품) 선정(의무)

| 사용자 |

- 퇴직연금사업자(공단)가 제시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규약에 반영합니다.

| 가입자 |

- 규약에 반영된 상품 중 1개를 선정해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은 가입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상품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상품 · 투자가이드-상품소개-디폴트옵션)에서 확인 가능

Q 디폴트옵션상품을 선정하지 않으면 가입자(근로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시 '동일상품 자동 재예치'가 금지되어, 이자수익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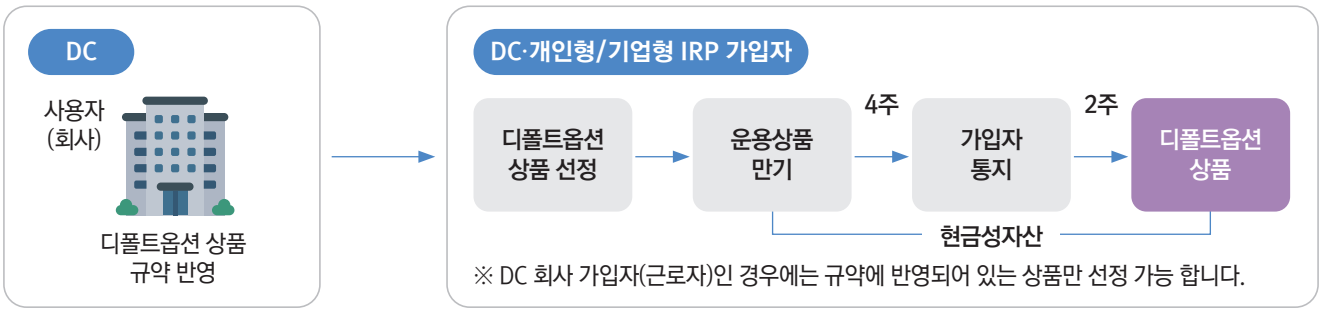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시

- 기존: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 변경:
 - 운용지시 없으면 디폴트옵션상품(원리금보장상품 선택가능) 예치
 - 운용지시와 디폴트옵션상품 설정 없으면 '대기성 자금(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보험, 신탁계약은 현금자산)'으로 유입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상품)의 자동 운용

- 운용상품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날 때까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 퇴직연금사업자(공단)는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됨을 안내 ➡ 2주 이내 별도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자동 운용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적용 |



※ 디폴트옵션상품 미선정 가입자 : 대기성자금(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보험, 신탁계약은 현금자산)으로 운용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상품) 선정 및 변경 방법(가입자)

- ①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DC)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자민원창구 ➡ 운용지시 ➡ 운용비율 및 사전지정운용방법 등록] 화면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또는 변경

- ② **서면(원금 보장상품만 가능)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DC) 홈페이지 접속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20호서식〉 사전지정운용방법(상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로 팩스 접수

※ 공단 퇴직연금(DC/IRP)홈페이지에 접속(개인회원 로그인)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여부'와 '대기성 자금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여부 확인

- **(소속사업장) 도입여부 :** 전자민원창구 ➡ 계약정보 ➡ 플랜정보 '계약정보'상 '사전지정선정여부' 확인
- **(가입자) 선정여부 :** 전자민원창구 ➡ 운용지시 ➡ 운용비율 및 사전지정운용방법 등록 '사전지정운용방법' 상품확인

대기성 자금(현금자산) 유무 확인 및 상품(운용자산) 변경

- **대기성 자금 유무 :** 전자민원창구 ➡ 자산현황 ➡ 상품별잔고조회에서 '현금자산(금리연동형보험)' 유무 확인
- **운용자산 변경 :** 전자민원창구 ➡ 운용지시 ➡ 운용자산변경 화면에서 '현금자산(금리연동형보험)' 선택 매도

대기성 자금 운용자산 변경방법

화면 : 전자민원창구 ➡ 운용지시 ➡ 운용자산변경

❶ **운용자산변경을 할 부담금을 선택합니다.**

❷ **매도상품선택 테이블 내 "현금자산" 상품을 선택합니다.**
* 신탁계약은 현금자산,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보험으로 표시됩니다.

❸ **매도상품 팝업입니다.**
- '전액매도'를 선택하시면 해당 계좌의 상품 전액을 매도하게 됩니다.
- '일부매도'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금액 혹은 비율을 선택하실 수 있고, 상단에서 입력하신 내용이 하단리스트에 반영됩니다.

❹ **매수할 상품 상품추가, 상품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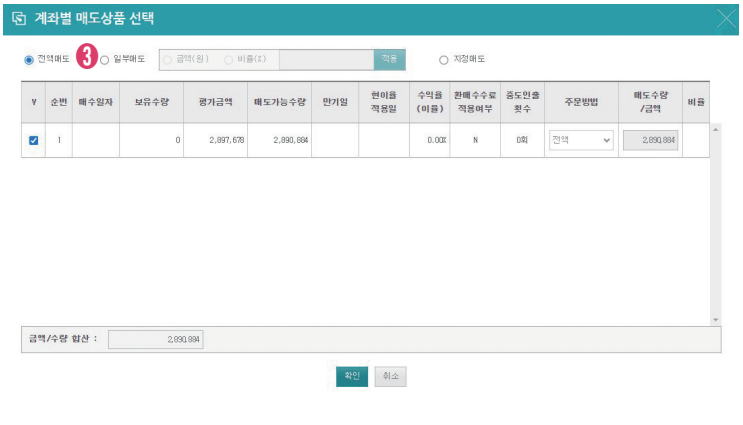
❺ **매수상품 선택 팝업입니다.**
- 매수상품은 다중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상품을 선택하고 하단의 추가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상품이 추가됩니다.

❻ **매수비율에서 상품별 매수비율을 입력합니다. 매수비율의 합계는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❼ **매도상품과 매수상품에 대한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적합성 원칙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창에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❽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운용자산변경이 마무리 됩니다.**







PART
04 추가 안내 사항

1. 퇴직연금 부담금 관련 현황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하며 가입자는 아래의 경로에서 회사(사업주)의 부담금 납입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등 세부 납입정보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DC/IRP)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접속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퇴직연금'으로 이동
③ 거래내역 조회

2.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

- 가입자는 아래의 안정적인 투자원칙을 참고하여 회사(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구성과 투자성향 |

- 투자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성향을 진단하여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중 어느 성향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 유형별 투자비중(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구성비율)을 정하고 상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장기 적립식 투자 |

-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경우 이자 및 수익이 원금과 함께 재투자되는 복리효과와 매입비용 평준화 효과(Cost Averaging Effect)로 인하여 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의 급변동 상황에서도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분산투자 |

- 분산투자는 여러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으로 같은 자산 내에서 여러 종목을 편입해 구성하는 자산 내 부산투자, 같은 상품의 매입 시기를 달리하는 시간 분산투자,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 간 분산투자로 구분됩니다.

- 분산투자 시 각 자산군별 위험 상쇄작용을 통해 투자위험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운용방법별 기대수익 및 투자 위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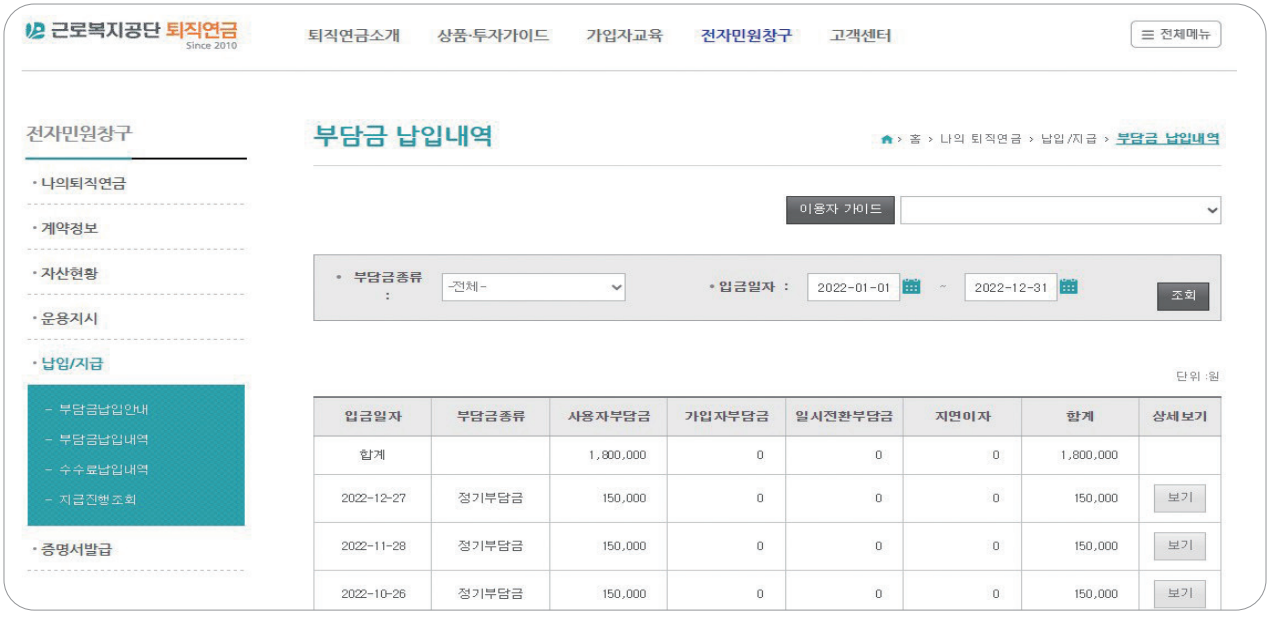
3.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 확인(가입자 권익 보호)

소중한 나의 퇴직연금!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부담금기여율)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퇴직급여

- **나의 사용자부담금 납입내역 확인하기**
 - 퇴직연금(DC/IRP)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 ➡ 로그인(개인회원) ➡ 전자민원창구 ➡ 납입/지급 ➡ **부담금 납입내역**





 -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증명서발급 ➡ **퇴직연금부담금 납입확인서(가입자별)**
 - 홈페이지 외에 퇴직연금 운용현황통지서를 통해서도 부담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퇴직급여 계산해보기

월퇴직급여 적립금(정기부담금(월납)) = 월기준급여 × 부담금기여율(1/12 이상)

예) 150,000원 = 1,800,000원×1/12

연간퇴직급여 계산해보기

연간퇴직급여(정기부담금(연납)) = 연간임금총액 × 부담금기여율(1/12이상)

예) 21,600,000원×1/12 = 1,800,000원

Q 납부된 퇴직급여액이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담금 납입내역에서는 입금일자로 납부된 퇴직급여액을 확인합니다. 정산 혹은 기준급여 변경을 소급하여 진행할 경우 해당년도가 아닌 다음연도에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부담금)를 납입했을 수 있으니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세요!

Q 급여가 올랐는데 월기준급여가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여 기준급여 변경 신청을 요청하세요!

Q 연간임금총액보다 부담금이 적게 적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여 퇴직급여(퇴직연금 부담금) 정산 신청을 요청하세요!

Q 퇴직연금 적립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갈까요?

-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교통비,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1) 정기부담금 : 정기적으로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월납/반기납/분기납/연납)
2) 월기준급여 :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월급여 중 퇴직연금 적립 산정 대상이 되는 급여)
3) 부담금기여율 : 사용자가 연간임금총액에서 퇴직급여를 납입하기로 한 비율(1/12 이상)

● 기준급여 변경 신청 방법 [사업장 신청]

①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 ➡ 로그인(기업 회원) ➡ 전자민원창구 ➡ 기준급여 변경 ➡ 가입자별 기준급여 '개별 또는 일괄변경' 처리

② **팩스 또는 방문 신청 :** 「퇴직연금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퇴직연금 가입자 변경 신청서(개별)'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퇴직연금가입자 기준급여 변경 신청서(일괄)' 작성 신청

● 퇴직급여(퇴직연금 부담금) 정산 신청 방법 [사업장 신청]

① **팩스 또는 방문 신청 :** 「퇴직연금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퇴직연금 부담금 정산 신청서' 작성 신청

▶ **서식위치** :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 ➡ 고객센터 ➡ 정보광장 ➡ **서식자료실**

▶ **퇴직연금담당찾기** :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 ➡ 고객센터 ➡ 고객지원실 ➡ **퇴직연금 담당자 찾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가입 및 이용 안내

인터넷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을 쳐보세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입자 정보 등록]을 확인하여 가입자 정보
(전화번호, email, 주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담당자 찾기	상담요청	고객센터
홈페이지 고객센터 ➡ 고객지원실 ➡ 퇴직연금 담당자 찾기	홈페이지 고객센터 ➡ 고객지원실 ➡ 사이버고객상담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회원가입 및 가입자 정보 등록 방법

❶ 회원가입



- **회원가입 : 「가입자웹등록」 클릭!**
 ① 본인인증(휴대폰 및 공동 인증)
 ②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
 ③ 회원가입 종료

- **로그인 방법**
 ①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기본)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여,
 - 인증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이용

❷ 가입자정보등록



- **사업장 인사 담당자가 등록할 경우**
 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② 전자민원창구
 ③ 가입자 관리
 ④ 상세내용 조회/변경
 ⑤ 상세클릭시 입력가능
 ⑥ 입력 후 변경내용 저장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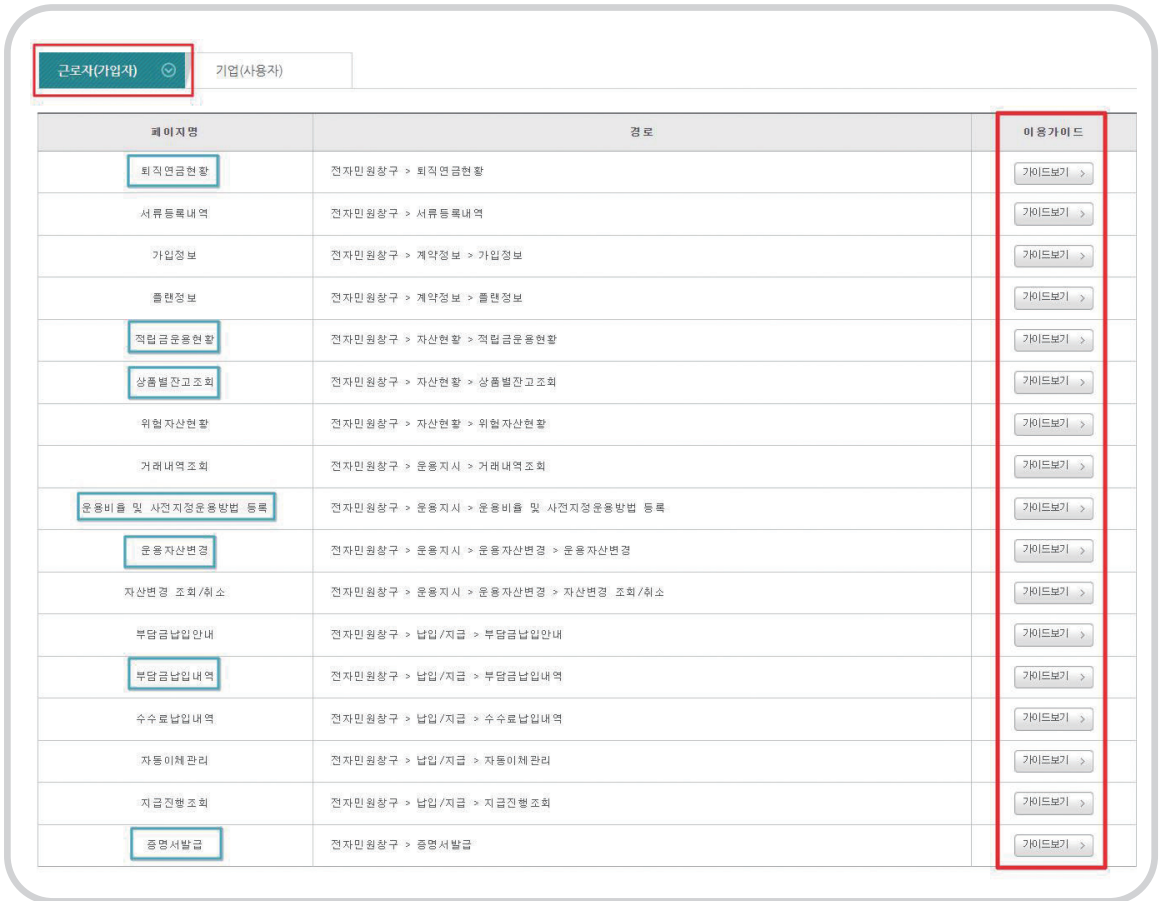
- **가입근로자가 직접 등록 할 경우**
 ①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마이페이지 회원정보변경 (변경 후 비밀번호 입력)
 ③ 확인 클릭

(이용자가이드를 활용한) 간편한 홈페이지 이용가능 업무

※ 홈페이지 ➡ 이용자가이드 ➡ 근로자(가입자) ➡ 이용가이드 하단 '가이드보기' 클릭 ➡ 가이드 따라 활용



(가입자) 이용가이드 목록



예시 1 퇴직연금현황

퇴직연금현황 - 이용자 가이드

1. 가입하신 퇴직연금의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납입하신 부담금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입자교육 기간과 이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적립금 운용 수익률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부담금 : 사용자나 가입자가 연금제도에 납입하는 납부금 퇴직금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납입하는 금액. DC는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부담금"이 있음

적립금 :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플랜 :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와 맺은 퇴직연금규약으로서 기업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랜을 보유할 수 있음
(예. OO전자 DC 1호 플랜, OO전자 DC 2호 플랜)

가입자 :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한 자

사용자 : 기업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업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



예시 2 적립금 운용현황

퇴직연금현황 - 이용자 가이드

페이지소개

1. 적립금운용현황을 확인하실 조회기간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간의 적립금 운용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가입정보와 연환산된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간별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운용중인 상품의 비율, 수익률, 잔고, 평가금액, 손익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부담금 : 사용자나 가입자가 연금제도에 납입하는 납부금 퇴직금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납입하는 금액. DC는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부담금"이 있음

적립금 :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 이외에도, '증명서 발급' 등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지급 신청하기

- 인사담당자(사업주)가 가입자(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웹접수

■ 퇴직연금 지급 신청 전 알아두기

평가금액 300만원 초과이면서 55세 미만 가입자	평가금액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인 가입자
- IRP계좌 개설 필수 - 시중 금융기관 또는 공단에서 개설가능	- 일시금 지급 또는 IRP계좌 선택

• IRP 계좌 입금 요청시 통장사본 등 IRP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이미지 파일 준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① 인사담당자로 등록된 인사담당자(사업주)가 신청
② 화면 : 전자민원창구 ➡ 납입/지급 ➡ 퇴직연금지급신청



■ 「퇴직연금지급신청」 하기

① 가입자명 선택 ➡ 가입자 정보입력
- 최종근무일자/중간정산일자/잔여부담금 입력

▶ 잔여부담금
납부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미납금이 있는 경우(예) 가입자가 20.11.15.퇴사이나 부담금을 10월분까지 납부한 경우 11월분 15일치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잔여부담금 해당사항 체크
☐ 없음 ☐ 계좌이체/희망이체일(날짜 선택)
☐ 자동이체



② 지급방식 선택
- IRP이전/일시금지급/사업장반환

③ 지급계좌입력
- 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명 입력 후 검증 클릭

▶ IRP계좌 입금시 통장사본 등 이미지 파일 첨부
- JPG, GIF 파일만 등록가능
※ IRP계좌 유의사항 : 클릭하여 팝업창 내용 확인





④ 완료 누르면 웹접수 ➡ 가입자(퇴직근로자)의 휴대폰 동의요청_카카오톡(문자)발송 ➡ 가입자동의(5일 내)

▶ 접수일로부터 5일내 가입자 미동의시 웹접수 자동취소

미청구 퇴직급여 청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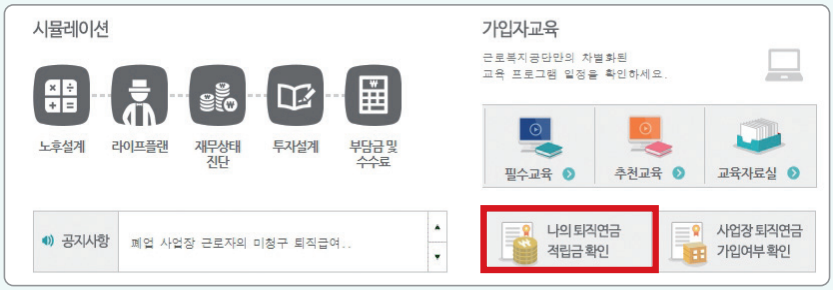
■ 미청구 퇴직급여(퇴직연금) 신청 대상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이후,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퇴직급여(퇴직연금) 적립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근속기간 1년이상자)

■ 미청구 퇴직급여(퇴직연금) 조회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

➜ ① [DC] 퇴직연금(DC/IRP) 홈페이지 바로가기 → (메인 화면 우측 하단 아이콘)나의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



➜ ② [기금] 푸른씨앗 홈페이지 바로가기 → (메인 화면 우측 하단 아이콘)퇴직연금 가입자정보확인



2.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 → 금융정보조회 →미청구퇴직연금조회

■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 방법

•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가 사업장 관할 공단지사로 직접 지급 신청 가능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① 제출서류

➜ [DC] 〈퇴직연금사업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퇴직급여 급여지급[IRP이전]신청서
➜ [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규정 별지 제19호서식〉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

② 퇴직사실증명용 자료(4대보험제도 자격상실 증빙서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체불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택1)

※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일시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이것만은 꼭!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재정지원

근로자

• 최대 3년간 **84만 3천원**의 **퇴직연금 추가** 적립

사업주

• 최대 3년간 **2,529만원** 지원

구분	푸른씨앗	타 금융기관
인당 재정지원	28만 1천원	해당없음
지원 근로자수	최대 30명	
지원기간	3년	
지원금액	1년 최대 843만원 3년 최대 2,529만원	

※ 가입 시 30인 이하 사업장 & '25년 월급여 281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30인까지 지원 가능

수익률

• '25년 연 수익률 **8.67%**, 누적 수익률 **34.47%**
('26년 6월 기준)

※ 전담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전문적, 안정적으로 운용

수수료

• 3년간 **0원**

※ 적립금 2억 가정 시, 매년 100만원 절감

구분	푸른씨앗	타 금융기관
수수료율	0%	0.50%
3년간 수수료	0원	3,000,000원
비용절감	매년 100만원(3년간)	없음

※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 부담

노·사 모두에게 Win-Win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하므로 장기 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운영**합니다.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받습니다.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 결정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준법감시필 2026-6

이제는 IRP도 푸른씨앗으로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1 가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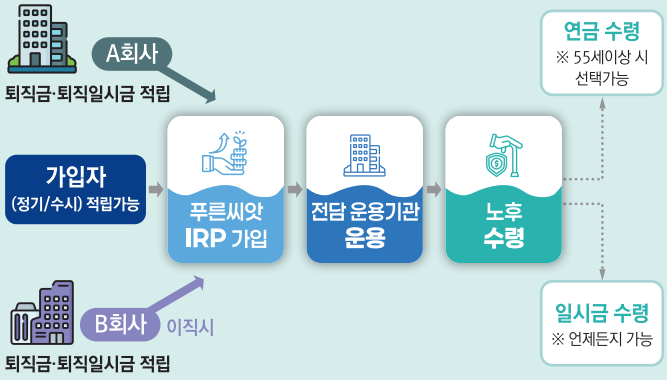
※ 각 단계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 홈페이지 또는 App(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가입 가능

가입 신청	가입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가입 처리	가입 대상 여부 검토 후 처리
▼	
가입 완료	가입 처리 후 부담금 납입
▼	
가입 조회	운용 자산 조회(수익률 등)

2 푸른씨앗 IRP

• 푸른씨앗에 납입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은퇴 후 연금 등으로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3 푸른씨앗 IRP 기본정보

구분		주요내용
납입단계	납입한도	주1)연간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세액공제	납입액에 대해 주2)최대 16.5% 세액공제
수령단계	수령요건	가입기간(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연간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평가금액/(11- 수령연차) X 120% ※ 단.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는 수령연차를 6년부터 시작
적용세제	연금수령 시 과세	주3)연금소득세 3.3 ~ 5.5%
	분리과세한도	주4)연간 1,500만원 한도 ※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수령액에 한함(퇴직소득 제외)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연금 외 수령 예외)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파산, 3개월 이상 요양 등
		기타소득세 16.5%(무조건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과세	연금소득세 3.3~5.5%(무조건 분리과세)

※ IRP계좌입금시간은 영업일 9시~16시까지 입니다.(주말, 공휴일 입금불가)

주1) 퇴직연금 DC 개인부담금,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납입한도 상관없이 ISA만기 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입금 가능)
주2) 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세액공제율13.2%
주3) 연령별 차등세율 적용 : 55세~69세:5.5% / 70세~79세:4.4% / 80세 이상:3.3%
주4) 연간 1,500만원 한도 초과 시 해당 금액 재원에 따라 종합과세 가능성이 있음(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 가능)

전담 운용기관

• 전담운용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안정적·전문적으로 기금 운용
▸ '24년 연 6.52%, '25년 연 8.67%
'26년 6월 기준 누적 34.47% 달성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661-0075(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